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고 제2026-6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과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징계 유형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제한과 환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정비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감액 기준 구체화(안 제7조)

나. 회의 질서 위반 등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환수 기준 신설(안 제7조)

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환수 기준 신설(안 제7조)

라. 월정수당지급 기준표 조정(별표2)

3. 입법예고기간: 2026. 11. 11. ~ 2026. 11. 17.(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